

⑤구지회 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6 조(직원임용) ①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지회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이하“시지부회장”이라 한다)이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②이동도서관에는 1대의 차량에 사서와 운전원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을 둔다.

③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 년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구지회 회장의 이동도서관 설치·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이동도서관은 직원임용 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지부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시지부회장은 제2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지회 회장을 지도·감독한다.

제 8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이동도서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93년도 영등포구청수물품취득동의(안)심사보고서

1993. 5. 24.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査經過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1993年 5月 19日 區廳長提出

나. 回附日字: 1993年 5月 20日

다. 上程日字: 第17回 永登浦區議(閉會中) 第2次 委員會(1993年 5月 24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財務局長 梁大雄)

가. 提案理由

구청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므로 최소보유로 인한 업무수행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함.

나. 主要内容

'93. 4. 10부터 전 동에 FAX이용 증계 민원처리 확대 시행에 따른 민원서비스 제공

다. 法的根據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및 제2항

3.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姜性熙)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동의 요청한 '93년도 영등포구청 수물품취득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교통이 불편하거나 장거리 거주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3. 4. 10부터 실시하는 전 동FAX이용 증계 민원처리(신원증명,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확대실시에 따른 소요장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시민봉사실의 장비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실정인 바 새로이 모사전송기 2대를 추가 설치함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므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원안 가결

'93년도 영등포구청수물품취득동의(안)

의안 번호	166
----------	-----

제출년월일: 1993. 5. 19.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1. 提案理由

구청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므로 최소보유로 인한 업무수행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함.

2. 主要骨子

'93. 4. 10부터 전동에 FAX이용 증계 민원처리 확대 시행에 따른 민원서비스 제공

3. 法的根據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및 제2항

1. 총괄내역

(단위:천원)

구분	승인요청		승인		불승인	
	품목	수량	품목	수량	품목	수량
계		금액		금액		금액
계	1	4,000				
	2					
신규취득	1	4,000				
	2					

2. 신규취득

(단위:천원)

연번	정수 품분 번호	구분 품목별	승인요청							
			부서별	기준			수량	단가	금액	취득사유
				정수	실수	부족				
18	5815- 347	모사 전송기	시민 봉사실	2	0	2	2	2,000	4,000	FAX이용중 계민원처리 확대시행

신규취득설명자료

○ 시민봉사실

- 품명 : 모사전송기

- 현황 : 장비보유가 없어 FAX이용 민원처리 확대 시행에 따른 대민행정에 어려움이 많음

- 필요성 : '93. 4. 10부터 전동 FAX이용 중계 민원처리 확대 실시(신원증명,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에 따른 소요장비를 취득하여 교통이 불편하거나 장거리 거주 민원의 편의도모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적극적인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코자 함.

- 소요예산 : 4,000,000원

○ 2,000,000원 × 2대 = 4,000,000원